

##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6. 14. 제천시장  
나. 회부일자 : 2006. 6. 15.  
다. 상정일자 : 2006. 6. 21.(제12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세정과장 박성웅)

가. 제안사유

- 지방세법 개정 공포(2005.12.31)에 따라 제천시조례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법」 제6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·상습체납자(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)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고, 도지사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함(제7조의 2항 신설)
  -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되고,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(제12조)
  -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차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 가능토록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부여(제22조)
  - 재산세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며, 제천시조례 제2조에서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별도 규정이 불필요 하므로 삭제(제25조)
  -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이 개정되고, 주택분재산세가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,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함

(제27조의 3, 제90조)

-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율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(제55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후준)

-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국세의 경우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써 지방세에도 본 제도를 도입하여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2회이상 체납한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 할 수 있도록 '05. 1. 31 지방세법 제69조 2의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이며 조문별 검토사항으로
- 제27조의 3, 제90조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소액 재산세에 대한 분할 납부의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하였으며,
- 제55조에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입법과정에서 국민건강진흥법과 연계하여 상당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나, 관련 20개비당 641원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법시행은 이미 '06. 1.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.

### 4. 질의답변 요지

#### 가. 질의요지

- 1억원이상 2회이상 체납자 인원은 몇명인가? (윤성열 의원)

#### 나. 답변요지 (세정과장 박성웅)

- 현재 4명으로 본 조례시행 즉시 공개하겠으며,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음

## 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## 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## 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## 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